

개정(안)	수정(안)	사유																								
<p>(3) 전차용역 수행실적</p> <p>*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前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p> <p>-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수행 후 경과 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p> <p>-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p> <p>-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당해용역에 인정되는 전차용역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p>	<p>(3) 전차용역 수행실적</p> <p>*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前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p> <p>-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수행 후 경과 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p> <p>-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p> <p>-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당해용역에 인정되는 전차용역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p>	<p>• 내용삭제 (의견1)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前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하는 사항으로 전차용역으로서 인정범위를 용역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야 하는바, 발주청에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발주청 권한을 강화</p>																								
<p>(4) 용역수행평가</p> <p>-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최근 3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p> <table border="1" data-bbox="100 1029 757 1189"> <tr> <td>용역 평가 결과</td> <td>95점 이상</td> <td>95점 미만 92점 이상</td> <td>92점 미만 89점 이상</td> <td>89점 이상 86점 미만</td> <td>86점 미만</td> </tr> <tr> <td>점수</td> <td>2점</td> <td>1.8점</td> <td>1.6점</td> <td>1.4점</td> <td>1.2점</td> </tr> </table> <p>*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p> <p>-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지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p>	용역 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p>(4) 용역수행평가</p> <p>-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최근 3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p> <table border="1" data-bbox="795 997 1451 1157"> <tr> <td>용역 평가 결과</td> <td>95점 이상</td> <td>95점 미만 92점 이상</td> <td>92점 미만 89점 이상</td> <td>89점 이상 86점 미만</td> <td>86점 미만</td> </tr> <tr> <td>점수</td> <td>2점</td> <td>1.8점</td> <td>1.6점</td> <td>1.4점</td> <td>1.2점</td> </tr> </table> <p>*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p> <p>-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지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p>	용역 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p>• 내용삭제 (의견2)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의 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삭제</p>
용역 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용역 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